

제328회 임시회
2014. 3. 20.(목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3. 20.(목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노광기 의원

나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4년 3월 3일
- 회부일자 : 2014년 3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2014년 3월 13일

- 제3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노광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,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, '보육정보센터'를 '육아종합지원센터'로 명칭 변경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 정비(안 제5조)
- “보육정보센터” 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명칭 변경(안 제6조, 제12조)
-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문구 정비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최창국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변경하고,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변경하였으며,
-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용어,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고 한다)의”를 “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”로, “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아울러 아동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”을 “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”로 한다.

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도의”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고 한다)의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조에 따라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”를 “각 호의 기준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: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
2. 보육전문가: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
3. 관계 공무원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
4. 어린이집의 원장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
5. 보육교사 대표: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

제6조 제2호 중 “보육정보센터의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의”로 하고,

제10호 중 “기타 영유아 및 아동의”를 “그 밖에 영유아”로, “위원장”을 “도지사 또는 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을 “1회에 한정하여”로 하고, “전임위원의”를 “전임위원 임기의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위원에 대하여는”을 “위원에게는”으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)”을 “(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반 정보의 제공, 상담, 또한 보육교직원들의 취업 정보를 위하여”를 “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”로,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로,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”를 “제12조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14조제5호 중 “영아·장애아”를 “장애아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영」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”를 “「영」 제15조제1항에 따른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하며,”를 “하고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때에는”을 “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6조에 따라”로, “사용한 때”를 “사용한 경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「법」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
제16조제1항제3호 중 “제1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4조에 따른”으로, “할 때”를 “될 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해산한 때”를 “해산한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

한다.

제17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육 정보센터”를 “센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보육정보센터”를 “센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위원에 대하여”를 “위원에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보호자 등 기타”를 “보호자 및 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영」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영」 제24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소요되는”을 “드는”으로 한다.

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허위”를 “거짓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고 한다)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, 보호자의 사회·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아울러 아동의 기본적인 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“방과 후 보육”이란 <u>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<p>제3조(책임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<u>보육교직원은 도의 시책에 협력하고,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등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책임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고 한다)의----- ----- ----- - 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설치)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제4조(설치) ----- ----- 제6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보육전문가</u> 2. <u>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</u> 3. <u>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</u> 4. <u>관계공무원</u> 5. <u>기타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</u> <p>③~④ (생략)</p>	<p>제5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: 전체 위원 100분의 45 이상</u> 2. <u>보육전문가: 전체 위원 100분의 20 이하</u> 3. <u>관계 공무원: 전체 위원 100분의 15 이하</u> 4. <u>어린이집의 원장: 전체 위원 100분의 10 이하</u> 5. <u>보육교사 대표: 전체 위원 100분의 10 이하</u> <p>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	<p>제6조(기능)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(생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2. <u>보육정보센터</u> 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	2. 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 의 ----- -----.
3. ~ 9. (생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<u>기타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</u> 에 관하여 <u>위원장이</u> 회의에 부치는 사항	10. <u>그 밖에 영유아</u> ----- ---- <u>도지사 또는 위원장</u> ----- -----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1회에 한하</u> <u>여 연임</u> 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 원의 임기는 <u>전임위원의</u> 남은 기 간으로 한다.	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 ----- <u>1</u> <u>회에 한정하여</u> ----- ----- <u>전임위원 임기의</u> ----- -----.
제11조(위원의 수당) 위원회에 참 석한 <u>위원에 대하여는</u>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.	제11조(위원의 수당) ----- ----- <u>위원에게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장 <u>보육정보센터</u>	제3장 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
제12조(<u>보육정보센터</u> 설치 및 운영)	제12조(<u>육아종합지원센터</u> 설치 및 운영)
① 도지사는 영유아의 보육에 관 한 <u>제반 정보의</u> 제공, 상담, 또한 <u>보육교직원들의</u> 취업정보를 위하 <u>여 충청북도</u> <u>보육정보센터</u> 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할	① ----- ----- <u>정보의</u> 수집·제공 및 <u>상담을</u> 위하여----- ----- <u>육아종합지</u> <u>원센터</u> -----

현행	개정안
<p>수 있다.</p> <p>②~⑤ (생략)</p>	<p>--- 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설치 기준) 센터의 설치 기준은 「영유아보육법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<u>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.</u></p>	<p>제13조(설치 기준) ----- ----- ----- <u>제12조에 따른다.</u></p>
<p>제14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영아·장애아</u>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</p> <p>6. ~ 10. (생략)</p>	<p>제14조(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장애아</u>----- -----</p> <p>6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구성)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<u>기타</u> 필요인원을 둔다.</p> <p>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「영」 제14조제1항 및 <u>「영」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.</u></p>	<p>제15조(구성) ①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「영」 제15조제1항에 따른다.</u></p>
<p>③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<u>하며</u>, 센터의 장은 센터를 대</p>	<p>③ ----- -- <u>하고</u>,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한다.</p> <p>④ 센터의 장은 도지사가 임명하 되,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 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 탁운영기관장이 임면하고, 보육 전문요원 및 기타 종사자는 센터 의 장이 임면하고 도지사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⑤~⑥ (생략)</p> <p>제16조(위탁의 취소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 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수탁기관이 「법」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 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</p> <p>2. 수탁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「법」 제36조의 규 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</p>	<p>⑤~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위탁의 취소) ① ----- ----- ----- <u>경우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제36조에</u> <u>따라</u> ----- ----- <u>사용한</u> <u>경우</u></p> <p>2.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「법」 제36 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</p>
<p>3. 수탁기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 행하지 못한다고 판단 할 때</p>	<p>3. ----- <u>제14조에</u> <u>따른</u> ----- ----- <u>될 경우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4.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<u>해산한</u> 때</p> <p>② 도지사는 <u>제1항의</u> 규정에 의하여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제17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기타</u>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</p> <p>② 운영위원회는 <u>보육정보센터</u>의 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4. ----- <u>해산한</u> 경우</p> <p>② ----- <u>제1항에</u> 따라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7조(운영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<u>센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6. <u>기타</u>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</p> <p>④ (생략)</p>	<p>6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⑤ 위원장은 <u>보육정보센터</u>의 장이 되며,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</p>	<p>⑤ ----- <u>센터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⑥ (생략)</p>	<p>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<u>위원</u>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⑦ ----- ----- <u>위원</u>에게는 ----- ----- -----.</p>
<p>⑧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<u>기타</u>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⑧ -----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9조(주민참여)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과정에 있어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, 보육교사, <u>보호자</u>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/p>	<p>제19조(주민참여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호자</u> 및 그 밖에 ----- -----.</p>
<p>제22조(비용의 보조) 도지사는 「법」 제36조 및 「영」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</p>	<p>제22조(비용의 보조) ----- ----- 「영」 제24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기타 도지사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<u>소요되는 비용</u></p>	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 드는 ---.</p>
<p>제23조(보조금의 반환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<u>대하여는</u> 이미 내어준 도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허위</u>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23조(보조금의 반환) ----- ----- ----- <u>대해서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거짓</u>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영유아보육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영유아(영유아)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·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8.4>

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·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제6조(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(이하 "중앙보육정책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(이하 "지방보육정책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2.6.29>

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,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, 관계 공무원(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)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

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6.29>

1.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: 전체 위원회의 100분의 45 이상
2. 보육전문가: 전체 위원회의 100분의 20 이하
3. 관계 공무원: 전체 위원회의 100분의 15 이하
4. 어린이집의 원장: 전체 위원회의 100분의 10 이하
5. 보육교사 대표: 전체 위원회의 100분의 10 이하

제7조(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)

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3.12.4>

1. 삭제 <2012.6.29>
2.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3.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. 다만,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.
4.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
5.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
6.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
7. 법 제49조의3 및 이 영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
8. 삭제 <2012.6.29>
9.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3조(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)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"각 육아종합지원센터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

수행한다. <개정 2011.12.8, 2013.12.4>

1.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

1의2.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
2.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(教具)의 제공 또는 대여

3.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·구직 정보의 제공

4. 어린이집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

5.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(脆弱保育)에 대한 정보의 제공

6. 부모에 대한 상담·교육

7.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

8.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

9.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,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2.4>